

공직선거법

- 문 1. 「공직선거법」상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각각 상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각각 최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판단되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④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 문 2.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
 - ④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문 3. 「공직선거법」상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후보자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방송 또는 기사게재로 인해 피해를 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경우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후보자는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선거일 이후 10일 이내에 방송 또는 기사로부터 인신공격이나 정책의 왜곡선전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방송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중앙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한다.
- 문 4.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 ③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 문 5.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 ②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산나발의 수는 2개를 넘을 수 없으며,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답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④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
- 문 6.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당적에 따라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문 7.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고,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ㄷ.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제외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ㄹ.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는 경우, 그 공약집에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도 게재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문 8.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나열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②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은 방송, 신문 등과 같은 언론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서 경영·관리·편집·집필·보도 등 선거의 여론 형성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언론인의 범위가 구체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사회복지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행정업무 및 사회서비스업무 등을 지원하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요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9. A지방자치단체의 장 甲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甲이 「공직선거법」상 ㉠에 근거하여 선거일 전 50일이 되는 날에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86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 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에 참석
- ②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에 참석
- ③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방문
- ④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문 10.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대표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 ③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수화 및 자막 등의 방영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별취급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 ④ 한국방송공사 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문 11.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③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 ④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문 12.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②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 ③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 ④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문 13.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 선거여론조사 및 후보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별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문 14.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ㄱ. 예비후보자 甲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이 되는 날에 자신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 ㄴ.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乙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1명, 선거연락소장 1명, 선거사무원 1명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지자 5명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였다.
- ㄷ. 선거사무원 丙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선거구민의 집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 ㄹ.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丁은 선거 운동기간 중 혼례식장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 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18.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재외선거 및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 ②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표참관인으로 선정·신고한 자 중에서 정당은 8인씩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씩을 참관하게 한다.

문 16. 「공직선거법」상 개표와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 ~ ㉣에 들어갈 주체가 A와 다른 것은?

누구든지 (A)이/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 (㉠)은/는 선거일 전 5일까지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 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은/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 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 (㉢)은/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 (㉣)은/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문 17.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공직선거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재외투표기간 중에는 그 일부를 국내로 먼저 보낼 수 없다.
- ④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

문 19.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 운동기간 중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ㄷ.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 ㄹ.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 ① $\neg$, $\cup$
② $\neg$, $\cap$
③ $\neg$, $\cup$, $\cap$
④ $\neg$, $\cup$, $\cap$, $\rightarrow$

문 20.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
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선인 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 ②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 ③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존신청을 할 수 있다.